

제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기간

- 1)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.
- 2)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기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(계약변경)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계약의 체결은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서비스대상자(본인)와 한다.

2. 계약목적

- 1)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도우며,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어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)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- 1) 노인장기요양보급여종류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은 ※ 별표와 같다.
- 2)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안내를 하고,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.
- 3)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까지 납부하되, 납부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
- 4)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.
(현금납부 시는 본인부담금 통장으로 이체시킨다.)

4. 이용자의 구비서류

- 1)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
- 2) 표준장기이용계약서 사본 1부
- 3)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
- 4)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

5. 이용자 등에 대한 기관의 의무

- 1)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항목을 지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근무하도록 교육한다.
 - 두발 신체 및 복장은 항상 청결히 한다.(매월 회의 시 확인한다.)
 - 근무에 적합한 단정하고 간편한 복장에 앞치마를 착용한다.
 -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 등 무례한 행위를 금하며 친절함을 유지한다.
 - 서비스제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이용자의 물건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,

반드시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구한다.

- 이용자와 계약한 일정 및 급여제공시간 등을 준수한다.
- 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제공시간과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 후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.

- 2) (1)항과 같은 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실시하여 신규요양보호사 또는 재배치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한다.
- 3) 사고 및 응급상황발생시 기관은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.
- 4) 당월 급여제공기록지를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게 한다.
- 5) 익월 급여계약통보서를 보호자 또는 전담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하여 이용자가 서비스제공 계획을 알 수 있게 한다(이용자의 식탁, 냉장고, 벽 등에 붙여 게시하게 함)

6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- 1)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- ①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실하는데 요구되는 필요사항에 적극적인 협력
- ②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,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③본인부담금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의무
- ④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⑤이용자의 부상, 이용자 또는 가정 등의 물품분실,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
- ⑥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 통보의무
- ⑦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및 기관종사자의 물품 등의 훼손,파손,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7. 계약의 해제

- 1)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(또는 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①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 - ②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
 - ③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 - ④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 - ⑤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 - ⑥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 외적인 부분을 요구할 때
 - ⑦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.

※ 별첨 .

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4.01.01)

○ 방문요양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6,630	150분 이상	48,250
60분 이상	24,120	180분 이상	54,320
90분 이상	32,510	210분 이상	60,530
120분 이상	41,380	240분 이상	66,770

○ 방문목욕 급여비용

차량이용(차량 내)	차량이용(가정 내)	차량미이용
84,670	76,340	47,670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등외
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/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/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.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%, 9%